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박현정[†] · 왕혜성[†] · 윤서현[†] · 이효주[†] · 조근자^{*}

국립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s attitude of paramedic students

Hyeonjeong Park[†] · Hyeeseong Wang[†] · Seohyun Yoon[†]

Hyojoo Lee[†] · Keun-Ja Cho^{*}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We aimed to identify the awareness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among paramedic students who will become paramedics in the future an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ose with an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ramedic students after consent to this study through online.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10 to August 2, 2023 and 14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program.

Results: 79.6% of the subjects knew who wa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but only 46.5% knew the reporting agency, and 30.3% knew the reporting procedure. Additionally, 83.8% were willing to report child abuse when discovered. Awareness of child abuse was 4.58 ± 0.29 points out of 5. The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was 3.53 ± 0.74 out of 5. Awareness of child abuse was determined by whether one wa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p < .05$), whether one was aware of the reporting procedure ($p < .05$), and whether one was willing to report child abuse ($p < .05$), ther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Attitude toward reporting obligation regarding child abuse was determined by gender ($p < .05$), whether one was aware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p < .05$),

Received November 04, 2023 Revised December 12, 2023 Accepted December 20, 2023

*Correspondence to Keun-Ja Cho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33 Fax: +82-41-850-0331 E-mail: kjcho@kongju.ac.kr

[†]The first author

and willingness to report upon discovery of child abuse ($p < .01$),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alistic educational content that can be linked to suspected abuse sites in hospitals and out of hospitals so that students who will become paramedics in the future can play an active role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Keywords: Attitude, Awareness, Child abuse, Paramedic student, Reporting oblig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사회적 위기로 인해 외부 활동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아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1].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2,251건, 2021년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2]. 학대받은 아이들은 신체적 손상 외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 우울 장애, 자살 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사회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 아동학대에서 학대 자체가 가져오는 현재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학대의 후유증으로 인해 아동들의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 더욱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아동학대는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4].

실제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전문기관의 도움만 바라기보다는 아동을 가까이에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해당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 및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5].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구급대의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6].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 혹은 구급대원으로 환자들과 만난다. 이때 학대는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자에서부터 병원 내 응급의학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관리에 직면하게 된다[7]. 예로 응급실이라는 공간은 내원한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 이유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장 먼저 평가받는 곳이 응급실이기 때문에 초기 학대 의심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 성적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횡수 중 46%가 응급실에서

검진되었다[8]. 그리고 구급대원 역시 가정에 출동하여 아동을 관찰할 특별한 기회를 가지며 이때 잠재적인 학대 또는 학대의 단서인 신체적 환경, 음식이나 필요한 약물의 부족 또는 눈에 보이는 알코올이나 약물을 보게 된다. 의사 소통이 힘든 영유아 학대에서 단서를 찾아내야 하고, 은폐된 학대를 전문적 소견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뿐 아니라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및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4].

이처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의 발견율은 5.02%이며 그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약 28.2%였다[9]. 이는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 비율은 66.7%로 우리나라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또한 응급구조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건[11], 2020년 1건[9], 2021년 3건[12]으로 낮은 숫자이다. Jung 등의 연구[13]에서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100점 기준 71점으로 나타났고 신고의무자로 인지하는 경우는 64.2%로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최초반응자로서 아동학대를 조기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미래에 응급구조사가 되어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13]는 제한적이며, 도구의 간결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학생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의 문항을 다양화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신고 의무 인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 의무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정도와 신고의무태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신고의무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분석하고 학대 인식 저하율과 정보 부족의 원인을 찾아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율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3/4년제 대학 중 3년제 대학 8개, 4년제 대학 15개 총 2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 0.30, 유의수준 = 0.05, 검정력 0.85로 분석하여 103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23명이었다. 총 185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2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탈락률은 23.2%로 예상보다 높았는데, 온라인 설문 의 한 계로 판단된다.

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아동학대 교육에 대한 특성 8문항,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44문항,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 7문항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도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서 개발하여 Kim[14]이 수정하고 다시 Kim[15]이 수정한 아동학대 인식 측정 도구를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학대 16문항, 정신적 9문항, 방임 12문항, 성적 학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확실한 학대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체적 학대 .77, 정서적 학대 .78, 방임 .89, 성적 학대 .68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에 대한 도구는 Kim[16]이 개발하고 Kim[15]이 수정한 도구를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수정 보

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23개의 3,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수집 방법 시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기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관련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통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의 여부 설명에는 익명성, 비밀보장에 되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내에서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통해 확인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편의추출을 시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며, 학교마다 아동학대 교육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3.4%(90명)였으며, 4년제 대학이 78.2%(111명)였고, 1학년이 33.1%(47명)이었다. 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68.3%(97명)이었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92.3%(131명)였다. 대상자 중 임상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61.3%(87명)이었으며, 구급 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76.1%(108명)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 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52 (36.6)
	Female	90 (63.4)
School system	3-year course	31 (21.8)
	4-year course	111 (78.2)
Grade	1 st year	47 (33.1)
	2 nd year	40 (28.2)
	3 rd year	31 (21.8)
	4 th year	24 (16.9)
Religion	Yes	45 (31.7)
	No	97 (68.3)
Sibling	Yes	11 (7.7)
	No	131 (92.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55 (38.7)
	No	87 (61.3)
Experience of prehospital field practice	Yes	34 (23.9)
	No	108 (76.1)

Table 2. The subject's child abuse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y	n(%)
Experience of completing child abuse education	Yes	87 (61.3)
	No	55 (38.7)
Educational channel (n=87)	School	73 (83.9)
	SNS	5 (5.7)
	Pamphlet	5 (5.7)
	Hospital	1 (1.1)
	Others	3 (3.4)
Experience of completing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Yes	76 (53.5)
	No	66 (46.5)
Educational channel (n=76)	School	57 (75.0)
	OnLine Training	11 (14.5)
	SNS	4 (5.3)
	Pamphlet	1 (1.3)
	Others	3 (3.9)
The need to complete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Yes	139 (97.9)
	No	3 (2.1)
Desired educational channel (n=139)	School	96 (69.1)
	OnLine Training	15 (10.8)
	SNS	14 (10.1)
	Hospital	12 (8.6)
	Pamphlet	1 (0.7)
	Others	1 (0.7)
Importance of Child Abuse Education Contents	Protection procedures for affected children	60 (42.3)
	How to report when a victim is found	57 (40.1)
	Child abuse prevention and laws	25 (17.6)
Recognition o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Yes	113 (79.6)
	No	29 (20.4)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agencies	Yes	66 (46.5)
	No	76 (53.5)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Yes	43 (30.3)
	No	99 (69.7)
Willingness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Yes	119 (83.8)
	No	23 (16.2)
Undeclared (n=23)	Not clear if it's child abuse	18 (78.3)
	Post-report procedures are burdensome	2 (8.7)
	Considered to be a family history intervention, so I don't feel the need	2 (8.7)
	Lack of information on reporting procedures and reception	1 (4.3)

는 61.3%(87명)이었고,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83.9%(73명)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53.5%(76명)이었고, 교육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75.0%(57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경우가 97.9%(139명)였으며, 교육받고 싶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69.1%(96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 아동 보호 절차라고 답한 대상자가 42.3%(60명)이었고,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113명(79.6%)이었다. 아동학대의 신고기관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53.5%(76명)였으며, 신고 절차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69.7%(99명)였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83.8%(119명)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 중 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다'가 78.3%(18명)였다.

2.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신고의무태도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신고의무태도는 <Table 3>와 같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58 ± 0.29 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성적 학대 영역이 4.83 ± 0.2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학대 영역 4.74 ± 0.32 점, 신체적 학대 영역 4.72 ± 0.26 점, 방임 영역이 4.13 ± 0.60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3 ± 0.74 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t = -0.600, p = .549$), 대학($t = 0.964, p = .337$), 학년($F = 1.401, p = .245$), 종교($t = -0.336, p = .737$), 형제자매 유무($t = 0.090, p = .928$), 임상실습 경험 유무($t = -0.235, p = .815$), 구급 실습 경험 유무($t = 1.248, p = .214$)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138, p = .034$). 남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는 3.68 ± 0.75 점, 여성의 신고의무태도는 3.42 ± 0.67 점으로 남성의

Table 3. The participant's level of awareness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N=142)

	M±SD	Scale Range
Awareness of child abuse	4.58 ± 0.29	1~5
Physical abuse	4.72 ± 0.26	
Mental abuse	4.74 ± 0.32	
Neglect	4.13 ± 0.60	
Sexual abuse	4.83 ± 0.25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3.53 ± 0.74	1~5

Table 4.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42)

Characteristics	Category	Awareness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M±SD	t or F(p)	M±SD	t or F(p)
Sex	Male	4.54±0.32	-0.600 (.549)	3.68±0.75	2.138 (.034)
	Female	4.57±0.30		3.42±0.67	
College	3-year course	4.60±0.34	0.964 (.337)	3.64±0.80	1.113 (.267)
	4-year course	4.52±0.30		3.48±0.68	
Grade	1 st year	4.49±0.28	1.401 (.245)	3.47±0.67	0.578 (.630)
	2 nd year	4.62±0.32		3.64±0.70	
	3 rd year	4.59±0.33		3.46±0.83	
	4 th year	4.54±0.31		3.45±0.63	
Religion	Yes	4.54±0.31	-0.336 (.737)	3.53±0.74	0.255 (.799)
	No	4.56±0.31		3.50±0.70	
Siblings	Yes	4.56±0.31	0.090 (.928)	3.53±0.71	0.910 (.364)
	No	4.55±0.29		3.32±0.6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4.55±0.33	-0.235 (.815)	3.48±0.72	-0.443 (.658)
	No	4.56±0.29		3.53±0.70	
Prehospital field practice experience	Yes	4.61±0.29	1.248 (.214)	3.53±0.79	0.133 (.894)
	No	4.54±0.31		3.51±0.68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학($t=1.113$, $p=.267$), 학년($F=0.578$, $p=.630$), 종교($t=0.255$, $p=.799$), 형제자매 유무($t=0.910$, $p=.364$), 임상실습 경험 유무($t=-0.443$, $p=.658$), 구급 실습 경험 유무($t=0.133$, $p=.89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 차이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는 신고의무자 인지($t=2.013$, $p=.046$), 신고 절차 인지($t=2.335$, $p=.022$), 발견 시 신고 의사($t=2.339$,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8 ± 0.31 점,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45 ± 0.27 점으로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64 ± 0.25 점, 신고 절차를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ild abuse education (N=142)

Characteristics	Category	Awareness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on child abuse	Yes	4.55±0.32	-0.049 (.961)	3.68±0.75	-0.321 (.749)	
	No	4.56±0.29		3.42±0.67		
Experience of completing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Yes	4.58±0.32	0.956 (.341)	3.55±0.66	0.751 (.454)	
	No	4.53±0.30		3.46±0.78		
The need to complete child abuse education	Yes	4.56±0.31	1.092 (.277)	3.53±0.69	1.872 (.063)	
	No	4.36±0.10		2.76±1.05		
Importance of Child Abuse Education Contents	How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4.59±0.29	3.62±0.62		
	How to report the discovery of child abuse		4.54±0.30	0.659 (.519)	3.59±0.80	2.071 (.130)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prevent and report child abuse		4.52±0.38	3.37±0.73		
Recognition o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Yes	4.58±0.31	2.013 (.046)	3.57±0.67	2.118 (.036)	
	No	4.45±0.27		3.27±0.79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agencies	Yes	4.60±0.30	1.397 (.165)	3.57±0.67	0.914 (.362)	
	No	4.52±0.32		3.46±0.74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Yes	4.64±0.25	2.335 (.022)	3.63±0.74	1.339 (.183)	
	No	4.52±0.33		3.46±0.69		
Willingness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Yes	4.58±0.30	2.339 (.018)	3.58±0.67	2.894 (.004)	
	No	4.42±0.32		3.13±0.79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2±0.33점으로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8±0.30점, 신고하지 않겠다고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인식 정도는 4.42±0.32점으로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교육 이수 경험(t=-0.049, p=.961), 아동학대신고 교육 이수 경험(t=0.956, p=.341), 아동학대 교육 이수 필요성(t=1.092, p=.277), 아동학대 교육내용 중요도(F=0.659, p=.519), 아동학대 신고기관 인지(t=1.397, p=.165)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신고의무자 인지(t=2.118, p=.036), 발견 시 신고 의사

($t=2.89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57 ± 0.67 점,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27 ± 0.79 점으로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58 ± 0.67 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지 않겠다고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13 ± 0.79 점으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하지 않겠다고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교육이수 경험($t=-0.321, p=.749$), 아동학대신고 교육이수 경험($t=0.751, p=.454$), 아동학대 교육이수 필요성($t=1.872, p=.063$), 아동학대 교육내용 중요도($F=2.071, p=.130$), 아동학대 신고기관 인지($t=0.914, p=.362$), 아동학대 신고 절차 인지($t=1.339, p=.183$)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아동학대 인

식의 전체영역과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33, p=.116$). 또한 아동학대 인식의 하부영역 신체적 학대($r=.151, p=.704$), 정신적 학대($r=.106, p=.208$) 방임($r=.090, p=.285$), 성적 학대($r=.066, p=.43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의무 태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자 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60.6%(86명)이었고,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86.9%(73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51.4%(73명)이었고,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78.4%(58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경우는 97.9%(139명)이었다. 교육받고 싶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69.6%(96명)이었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동학대의 신고기관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53.5%(76명)이었고, 신고 절차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69.7%(99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awareness of child and elder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N=142)

	Awareness of child abuse				
	Total	Physical abuse	Mental abuse	Neglect	Sexual abuse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133 (.116)	.151 (.704)	.106 (.208)	.090 (.285)	.066 (.435)

* value $r(p)$

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83.8%(119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 중 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다'가 78.3%(18명)이었다. Kim의 연구[15]에서도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불충분한 증거'라는 답변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판단에 확신이 없음' 22.5%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향후 신고의무를 가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학대 발견 시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58 ± 0.29 점(100점 환산 시 91.6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영역은 성, 정서, 신체, 방임 4가지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인식률이 높은 영역은 성적 학대 영역으로 4.83 ± 0.25 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학대 영역 4.74 ± 0.32 점, 신체적 학대 영역 4.72 ± 0.26 점, 방임 영역이 4.13 ± 0.60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등[13]의 연구에서는 100점으로 환산 시 전체평균 71점으로 신체적 학대(98.7점), 정서적 학대(94점), 방임(70.5점), 성적학대(6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평균은 3.60점, 심리적 학대 인식 평균 2.98점, 신체적 학대 방임 2.82점으로 나타났다[17]. 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 정도는 성적 학대 4.60 ± 0.51 점, 정서적 학대 4.43 ± 0.55 점, 신체적 학대 3.92 ± 0.51 점, 방임 3.64 ± 0.59 점으로 나타났다[18]. 본 연구에서는 Jung 등[13]의 연구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이 높은 순서도 본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가장 인식이 높았고, Jung 등

[13]의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가장 인식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문항이 44문항으로 성적학대 영역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Jung 등[13]의 연구에서는 전체 20문항이고 성적학대 영역이 1문항으로 이 한 문항에 대한 인식이 성적학대를 대변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전체 평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Cho와 Chung의 연구[17]와 비교할 때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은 성, 정서, 신체, 방임 순으로 동일하게 도출되었고, Kim과 Cho의 연구[18]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유형별 심각성이 높다고 지각되는 유형에 따라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선행연구[17, 18]와 본 연구에서 방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방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영역에 비해 신고 건수가 낮게 집계되었고 잘 알려지지 않아 방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확장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학년($F=1.401$, $p=.245$), 현장실습 유무($t=-0.235$, $p=.815$), 아동학대 교육이수 유무($t=-0.049$, $p=.96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들이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년과 교육이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신고 절차 인지($t=2.34$, $p=.022$)와 발견 시 신고 의사($t=2.40$,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한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는 4.64 ± 0.25 점,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는

4.52±0.33점으로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 대상자의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은 4.58±0.30점, 신고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들은 4.42±0.32점으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Zellmann[19]과 Gurn 등[20]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아동학대 신고와 강력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신고절차에 따라 인식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Cho와 Park의 연구[21]에 따르면 신고 의무 실천 의지에 따라 지각한 학대의 인식 차이에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점수는 3.57±0.39점, 신고 미이행이라고 답한 대상자들은 3.08±0.62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6.12$, $p<.001$)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와 신고 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신고 절차 인지와 신고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의심에서 학대인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3±0.74점이었다. 신고의무태도의 하위 항목 중,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55±1.11점으로 가장 낮았고,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04±0.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9±0.7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학년 ($F=0.578$, $p=.630$), 현장실습 유무($t=-0.443$,

$p=.658$), 아동학대 교육이수 유무($t=-0.321$, $p=.74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신고의무자 인지($t=2.12$, $p=.036$)와 발견 시 신고 의사($t=2.69$,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시에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Kim과 Cho[4]의 연구에서 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44$, $p=.011$)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36$, $p=.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4, 15]와 유사하게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와 신고 의사가 신고의무태도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태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 향상을 밑바탕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태도(3.53±0.74)는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4.58±0.29)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신고의무태도는 아동학대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들의 학대 인식이 높더라도 정작 신고를 이행할 태도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학대 인식이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 학대 교육뿐만이 아닌 학대 신고 절차 및 제도와 응급구조사가 갖는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태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예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학대 의심 상황에 필요한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한 증거 확보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97.9%가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받기 원하였으며, 희망하는 교육경로로 학교(69.1%)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이기 때문에 많은 선호도를 보인 것 같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효과적인 대학생들의 접근을 위해 강의, 세미나, 온라인 간행물, 홍보 매체 등 교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22]에서는 산소아 응급처치학 등 일부만이 아동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가 되어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까지 이어져 응급구조사의 신고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동학대에 노출된 환자를 보호할 전문적 지식의 학습 비율을 증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교과과정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응급구조(학) 교과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이론으로만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학습 방식보다 참여형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시뮬레이션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병행된 학대 상황 시뮬레이션 수업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대학 교육과정으로 개발되길 바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주 취업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대로 아동학대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최초 반응단계이다. 그렇기에 미래 응급구조사가 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아

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가진다면 응급 의료현장에서 아동학대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대다수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기관과 신고 절차를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약 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로는 학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인식이 높은 경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에 응급구조사가 될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과 병원밖 학대 의심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응급구조사가 될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ORCID ID

Hyeonjeong Park: 연구설계, 문헌고찰, 자료 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0009-0006-0652-8932

Hyeseong Wang: 연구설계, 문헌고찰, 자료 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0009-0001-5333-750X

Seohyun Yoon: 연구설계, 문헌고찰,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0009-0002-1764-8762

Hyojoo Lee: 연구설계, 문헌고찰,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0009-0001-5097-1054

Keun-Ja Cho: 연구설계, 연구도구 지도, 자료 분석지도, 결과해석지도, 논문작성지도

0000-0001-6630-0274

References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hild Welfare Act.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24935#0000>, 2023.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received, Available at: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1&conn_path=I2, 2022.
3. Lee HJ, Jang HY, Byeon JB, Jung JH, Ryu JM, Kwak YH, Park JD. Pediatricians and emergency physicians' recognition and training regarding child abuse. *Ped Emerg Med J* 2015;2(1):35-47.
<https://doi.org/10.22470/pemj.2015.2.1.35>
4. Kim TH, Cho KJ.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mong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19;23(2):43-59.
<https://doi.org/10.14408/KJEMS.2019.23.2.043>
5. Lee CH. A study on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rimes.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2018;31(1):157-86.
<https://doi.org/10.35930/KJPR.31.1.6>
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615#0000>, 2023.
7. Alphonso A, Auerbach M, Bechtel K, Bilodeau K, Gawel M, Koziel J, Whitfill T, Tiyyagura GK. Development of a child abuse checklist to evaluate prehospital provider performance. *Prehosp Emerg Care* 2017;21(2):222-32.
<https://doi.org/10.1080/10903127.2016.1229824>
8. Emergency Nurses Association. Sheehy's Emergency Nursing : Principles and Practice. 5th ed.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div, 2002, 789-92.
9. Child Rights Security Agency,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16-7.
10.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20. Available a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0.pdf>, 2020.
11. Child Rights Security Agency.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16-7.
12. Child Rights Security Agency. Child Abuse &

- Neglect Korea 20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16-7.
13. Jung JY, Sin SY, Lee JM. Paramedic student perception and attitude on child abus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20;25(12):219-26.
<https://doi.org/10.9708/jksoci.2020.25.12.219>
 14. Kim WH.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children parents' experiences of caregiver's childhood and child abuse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4, Daegu, Korea.
 15. Kim YJ. Awareness and attitude to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nd elder abuse and domestic violence of emergency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2, Kongju, Korea.
 16. Kim SJ. Nursing students' percepti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omestic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6, Daegu, Korea.
 17. Cho YH, Chung YH.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Agric Med Comm Health* 2013;38(2):85-96.
<https://doi.org/10.5393/JAMCH.2013.38.2.085>
 18. Kim EJ, Cho KM. A study on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buse victim and the perception about severity child abuse of nursing students. *J Play Therapy* 2011;15(2):97-109.
 19. Zellman GL. Report decision-making patterns among mandated child abuse reporters. *Child Abuse Negl* 1990;14(3):325-36.
[https://doi.org/10.1016/0145-2134\(90\)90004-d](https://doi.org/10.1016/0145-2134(90)90004-d)
 20. Gunn VL, Hickson GB, Cooper WO. Factors affecting pediatricians &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maltreatment. *Ambul Pediatr* 2005;5(2):96-101.
<https://doi.org/10.1367/A04-094R.1>
 21. Cho EJ, Park EY.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child abuse perceived by childcare teachers and mandatory reporter's practical volition. *J Humanities Social Sciences* 21 2020;11(2):669-83.
<https://doi.org/10.22143/HSS21.11.2.46>
 22. Choi ES, Hong SG, Lee KY, Yun HW, Han ST, Ju JM et al. A study on the second standardization of the paramedic curriculum in South Korea. *Korean J Emerg Med Ser* 2020;24(3):7-27.
<https://doi.org/10.14408/KJEMS.2020.24.3.007>